

1964 년 Civil Rights Act(공민권법) 제 6 장(Title VI)에 따른 이의 신청 안내

제 6 장은 연방 자금 또는 기타 형태의 연방 금융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및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1964 년 공민권법의 일부입니다. 특히, 제 6 장은 “미국에 있는 누구도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근거로 연방 금융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참여를 배제당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42 U.S.C. § 2000d 에 규정합니다. 연방 금융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 참여를 배제당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고 간주하는 경우, 금융 지원을 제공한 연방 기관 소속 민권담당국(Office for Civil Rights)에 제 6 장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제 6 장은 “사람(들)”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법령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미국 시민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함해야 하는 정보

연방 기관에 제기하는 제 6 장 이의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귀하의 연락처 정보(예: 전화번호, 주소)
 - a.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귀하의 성함, 연락처 정보 및 이의 제기 신청자와의 관계를 포함해 주십시오.
2. 차별 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연방 금융 지원 수령자
 - a. (예: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3. 차별 행위를 저지른 날짜를 비롯해 혐의와 관련된 설명
 - a. (예:).
4. 명시된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데 차별 행위 혐의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
 - a. 부정적 효과란 차별 행위 혐의로 인한 자연스럽게 발생한 부정적 결과를 말합니다.
 - b. (예:).

5. 제 6 장이 보호하는 범위(예: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근거로, 부정적 결과가 개인 또는 집단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

a. 차별이란 보호받는 계층과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의 비교를 말합니다. 차별 혐의는 이의 제기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b. (예:).

6. 차별 혐의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당할 소지가 있는 모든 보복 조치(해당하는 경우)의 설명

a. 차별 혐의 제기에 따라 독립체가 취한 부정적 행위와 관련된 보복 조치 내용

b. (예:).

7. 이의 신청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기관에서 재량권을 행사하고 제기한 이의를 나중에 수리한다고 하더라도, 차별 행위 발생 후 180 일 내에 연방 기관 소속 민권담당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기관에서 이를 수령해야 합니다. 180 일 기간 내에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래의 주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 양식을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City of Norwalk
Norwalk Transit System
Title VI Coordinator
12650 E. Imperial Highway
Norwalk, CA 90650

Norwalk Transit System 을 대상으로 하는 제 6 장 이의 제기 절차 진행에 더불어, 다음 주소로 제 6 장 교통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Office of Civil Rights, Region IX
201 Mission Street, Suite 1650
San Francisco, California 94105-1839